#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발의연월일 : 2020. 2.
발 의 자 : 의 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84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① **위원의 정수** : 3명 이상 5명 이내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선임 및 절차** : 의장 추천 ⇒ 본회의 의결 ⇒ 위촉장 교부

③ **위원자격**(지방의회의원 이외의 위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세무·회계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이 대표검사위원이 됨

④ **활동기간** : 집행기관 일정에 따라 운영 (20일 이내, 필요시 5일 연장)

## 3. 추천 대상자 : 4명

| 구 분 | 직 업 | 성 명 | 성별 | 비 고 |
|---|---|---|---|---|
| 검사위원<br>(대표검사위원) | 구 의 원 | 서 정 학 | 남 | |
| 검사위원 | 공 인 세 무 사 | 황 원 재 | 남 | |
| 검사위원 | 공 인 회 계 사 | 김 대 일 | 남 | 2018 검사위원 |
| 검사위원 | 전 직 공 무 원 | 박 도 근 | 남 | 2018 검사위원 |

※ 2018회계연도 대표검사위원 : 김백철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2. 25.

의회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3. 원영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 원영숙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성군)

나. 회부일자 : 2020. 2. 13.

다. 상정일자 : 2020. 2. 24.(제1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기훈 의원)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개정: 2019.12.10. 시행: 2020. 1. 1.)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중 '도시재생과'를 삭제 (안 제3조)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중 '교통안전도시국'을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으로 변경 (안 제3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20. 1. 1.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집행부의 일부 조직이 신설되어 소관 부서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토론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붙　　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도시재생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 중 “교통안전도시국”을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상임위원회의 사무 등)<br>① (생략)<br>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br>1. 의회운영위원회<br>가. ~ 다. (생략)<br><br>2. 기획관광행정위원회<br>가. 기획조정실, <u>감사담당관, 도시재생과</u>에 속하는 사항<br>나. ~ 다. (생략)<br><br>3. 주민도시보건위원회<br>가. 주민복지국, <u>교통안전도시국</u>에 속하는 사항<br>나. ~ 다. (생략) | 제3조(상임위원회의 사무 등)<br>① (현행과 같음)<br>② ----------<br>1. ----------<br>가. ~ 다. (현행과 같음)<br><br>2. ----------<br>가. -------, <u>감사담당관</u>----------<br>나. ~ 다. (현행과 같음)<br><br>3. ----------<br>가. -----, <u>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u>-------<br>나. ~ 다. (현행과 같음)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2. 25.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3. 임말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 임말숙 김상수 김백철 조영진 이상곤 원영숙 정순세 문현신 김경호 김혜진 장성철 박기훈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3.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5.(제2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임말숙의원)

가. 제안이유

각종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해운대구민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 ❍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임명과 역할(안 제6조)
- ❍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7조 및 제8조)
- ❍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및 데이터의 수집·관리(안 제9조 및 제10조)
- ❍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활용 분야 및 활성화(안 제11조 및 제12조)
- ❍ 사무의 위탁 및 평가·포상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가공·분석하여 구의 주요정책 수립·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활성화는 물론,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분석 및 미래수요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조례안의 더 나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정 전체에 대해 데이터기반행정을 총괄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투입, 인력 등 검토

❍ 수정안 발의 (정순세의원)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조(목적) ① ----------구축·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붙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해운대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해운대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운대구(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구청장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하 ‘행정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하며, 관련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행정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2.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③ 행정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 제공, 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1조 (활용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6.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3조(데이터 분석·활용 제고) 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등은 제11조에 따른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안 제9조제1항 중 ‘구축·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기관, 부산광역시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br><br>② (생략) | 제1조(목적) ① ----------구축·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br><br>② (제정안과 같음)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2. 25.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3. 원영숙의원 대표발의

※ 발의자 : 원영숙 문현신 김상수 조영진 정순세 박기훈 장성철 김성군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3.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4. (제1차 회의)
2020. 2. 25. (제2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원영숙 의원)

가. 제안이유

해수욕장 관리 조례 중 불필요하거나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을 위해 고쳐야 할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게 정비(안 제1조)
- ❍ 정의중 불필요한 용어 삭제(안 제2조)
- ❍ 일반적인 적용범위로 변경(안 제3조)
- ❍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삭제
- ❍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및 위탁 내용 신설(안 제5조 내지 제11조)
- ❍ 사용료 기준 정비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12조)
- ❍ 해수욕장협의회 관련 내용 정비(안 제15조 및 제20조)
- ❍ 기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수욕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용어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9조 및 제21조와 영 제8조에 따라 수탁자 지정 시 공개모집 방식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 위탁 운영에 투명성을 기했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등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 다만, 수탁자 지정 시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탁자 변경·해지 시에도 여기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

❍ 수정안 발의 (문현신의원)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 · 개선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휴양공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 |
|---|---|
| 1. ~ 2. (생략)<br>(신설)<br><br>3. ~ 5. (생략) | 1. ~ 2. (개정안과 같음)<br>3. “해수욕장시설사업” 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br>4. ~ 6. (개정안과 같음) |
| 제10조(수탁자의 지정해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br>1. (생략)<br>2. 구청장이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br>3. ~ 5. (생략) | 제10조(수탁자의 지정해지) ----------<br>1. (생략)<br>2. <삭 제><br><br>2. ~ 4. (개정안과 같음) |
|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br>1. (생략)<br>2. 해수욕장내 대여용품의 사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결정<br>② ~ ④ (생략) |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br>1. (개정안과 같음)<br>2. ----------별표 1----------<br>② ~ ④ (개정안과 같음) |
| 제14조(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br>1. 법 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br><br>2. ~ 5. (생략)<br>6. 수수료, 해수욕장 청결유지비 등 수탁자 부담분 결정<br>7. ~ 8. (생략) | 제14조(협의회의 설치) ----------<br>1.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및 해제<br>2. ~ 5. (개정안과 같음)<br>6. 별표 2에 따른 ----------<br>7. ~ 8. (개정안과 같음) |
| (신설) |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 | |
|---|---|
| | 1. 위원이 심의대상단체(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경우<br>2. 위원이 심의대상단체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br>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br>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br>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 제20조(간사와 서기) ① ~ ② (생략)<br>(신설) |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 ② (생략)<br>③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
| 제21조 ~ 제22조 (생략) | 제22조 ~ 제23조 (개정안과 같음) |

[별표 1]

해수욕장 청결유지를 위한 비용 부과기준(제14조제6호 관련)

| 적용대상 해수욕장 | 부과금액 적용범위 | 비고 |
|---|---|---|
| 해운대해수욕장 | 파라솔 운영구간별 2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
| 송정해수욕장 | 파라솔 운영구간별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별표 1]

해수욕장 이용객으로 받는 요금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 대여품목 | 요금 기준 | 비고 |
|---|---|---|
| 파 라 솔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비치베드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부 기 류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구명조끼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별표 2]

해수욕장 이용객으로 받는 요금 기준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 대여품목 | 요금 기준 | 비고 |
|---|---|---|
| 파 라 솔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비치베드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부 기 류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구명조끼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별표 2]

해수욕장 청결유지를 위한 비용 부과기준(제14조제6호 관련)

| 적용대상 해수욕장 | 부과금액 적용범위 | 비고 |
|---|---|---|
| 해운대해수욕장 | 파라솔 운영구간별 2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
| 송정해수욕장 | 파라솔 운영구간별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붙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시스템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피서용품 대여, 샤워·탈의·보관 등 편의시설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2조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수욕장 개장 14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제한시간을 공지 가능한 매체와 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등)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사업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개선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용료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④ 수수료 수입의 전액은 개선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해수욕장 내 청결유지
2. 규정요금의 준수 및 현금 징수 불가
3. 시설사용료 안내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게시 내용 준수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구청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7. 사용료, 해수욕장 청결유지비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른다.
8. 수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의 금지

제10조(수탁자의 지정해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는 품목별 시중가격을 고려하여 결정
2. 해수욕장내 대여용품의 사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결정

② 구청장은 매년 결정된 사용료와 사용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제13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1.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및 해제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3.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4.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해지 결정
5.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결정

6. 별표 2에 따른 해수욕장 청결유지비 등 수탁자 부담분 결정
7.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사업 수수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관광경제국장
   나. 해운대보건소장
   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라. 부산해양경찰서장(송정파출소장을 포함한다)
   마. 해운대소방서장
   바. 부산지방기상청장
   사. 해운대경찰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소비자, 물가 관련 단체의 장
   다.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촉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단체(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단체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운영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해수욕장 이용객으로 받는 요금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대여품목 | 요금 기준 | 비 고 |
|---|---|---|
| 파 라 솔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비치베드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부 기 류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구명조끼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별표 2]

## 해수욕장 청결유지를 위한 비용 부과기준(제14조제6호 관련)

| 적용대상 해수욕장 | 부과금액 적용범위 | 비고 |
|---|---|---|
| 해운대해수욕장 | 파라솔 운영구간별 2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
| 송정해수욕장 | 파라솔 운영구간별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안 제1조 중 ‘친수공간’을 ‘휴양공간’으로 한다.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고, 안 제2조 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 제10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안 제12조 1항 2호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안 제14조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조 및 제7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및 해제

안 제14조 4호 중 ‘수탁자 지정 심의’을 ‘수탁자 지정 및 해지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수료’를 ‘별표 2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20조 내지 제22조를 제21조 내지 제23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단체(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단체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안 제20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해수욕장 이용객으로 받는 요금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대여품목 | 요금 기준 | 비 고 |
|---|---|---|
| 파 라 솔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비치베드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부 기 류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 구명조끼 | 1회 1개당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 |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 해수욕장 청결유지를 위한 비용 부과기준(제14조제6호 관련)

| 적용대상 해수욕장 | 부과금액 적용범위 | 비고 |
|---|---|---|
| 해운대해수욕장 | 파라솔 운영구간별 2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 |
| 송정해수욕장 | 파라솔 운영구간별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2. 25.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4.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4.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5.(제2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계획 수립(안 제5조 ~ 제6조)

○ 위임기관 위탁 승인 및 구의회 동의(안 제7조 ~ 제8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안 제9조)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10조 ~ 제12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 제13조)

○ 위탁계약 체결, 재계약 및 해지(안 제14조 ~ 제16조)

○ 위탁사무의 관리·운영 방법 및 지원(안 제18조 ~ 제22조)

○ 수탁기관의 관리 · 감독, 감사 및 성과평가(안 제23조 ~ 제2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 ‘18.11.) 내용을 반영하고, 2019.9.17.부터 시행하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 단계별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여 민간위탁 사업추진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붙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구청장은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하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위탁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7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의 선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5.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7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제7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 선정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청장이 전문성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임명위원 :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직원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 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 위탁사무명 · 위탁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기간 만료 시 새로운 수탁기관의 선정 또는 재계약)** 구청장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6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3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4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사업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나 시설물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양도·대여할 수 없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6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현황·기구·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 처리기간 · 처리과정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무편람을 작성 · 비치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도 · 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 감독하고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면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br>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1. 제안이유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2. 25.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3.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3.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5.(제2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정책과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필요 인력 등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총정원 및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 정원 변경(안 제2조)

- 총정원 : 1034명 ⇒ 1063명, 집행기관의 정원 : 1016명 ⇒ 104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 19명

❍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 변경(안 별표 3)

- 총계 : 1034 ⇒ 1063, 일반직 계 : 1033 ⇒ 1062,
  6급 이하 계 : 970 ⇒ 999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2조와 별표3에서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이 29명 증가한 것은 감염병 대응, 주민참여예산 전담 등 국가정책사업과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 지역현안 해결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반영하여 증원한 것이며,

❍ 증원분야는 행정6, 세무3, 사회10, 간호5, 공업(전기)3, 보건1, 운전1명으로, 직급별 증원은 기준인건비 범위내 인력운영과 인건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하급 직급 위주로 6급3, 7급2, 8급5, 9급 19명 증원한 것이며,

❍ 인건비는 행정직 등 정원 순증에 따른 구비 944백만원, 직급별 정원변동(승진)에 따른 추가비용 14백만원 등 매년 958백만원의 비용증가가 예상되어 예산확보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붙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34명”을 “106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16명”을 “1044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18명”을 “1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구 분 | 총계 | 본청 | 의 회<br>사무국 | 직속<br>기관 | 사업소 | 동 |
|---|---|---|---|---|---|---|
| 총 계 | 1063 | - | | | | |
| 정무직 | 1 | - | | | | |
| 구청장 | 1 | 1 | | | | |
| 일반직 | 1062 | - | | | | |
| 3급 | 1 | 1 | | | | |
| 4급 | 7 | 5 | 1 | 1 | | |
| 5급 | 55 | 24 | 2 | 8 | 3 | 18 |
| 6급 이하 | 999 | - | | | | |

# 신·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3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br>1. 집행기관의 정원 : 1016명<br>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 제2조(정원의 총수) ----------1063명--------,----------.<br>1. ---------- : 1044명<br>2. ---------- : 19명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2. 25.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4.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4.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5.(제2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8.6.) 공포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구정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 적극행정의 목적(안 제1조)
-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안 제3조)
- ❍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 ❍ 위원의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안 제5조 ~ 제6조)
- ❍ 간사, 수당 등, 운영세칙(안 제7조 ~ 제9조)및 변경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 안 제2조에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점검해야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8.6.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반영된 것으로,

❍ 우리 구에서는 「해운대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적극행정 유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극행정 추진 시 감사나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므로 부정적 영향이 많아 제도를 통한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붙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본청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2. 25.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4.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4.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4.(제1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관광문화과장)

가. 제안이유

해운대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및 관광기념품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안 제3조)
- ❍ 관광기념품 위원회 운영 (안 제4조~제6조)
- ❍ 관광기념품 홍보관 운영 및 관리 (안 제7조~제9조)
- ❍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안 제10~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수행 내용 및 '관광기념품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관광기념품 홍보관 운영 및 관리, 수탁자 의무사항과 위탁해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관광기념품 발굴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지정절차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사후관리와 업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업체의 육성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해운대만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육성과 홍보관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운대 이미지 가치상승에 기여함은 물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 다만, 제3조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해제,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등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돼 있으나, 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로써 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인 참여 등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배척·회피·기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관련조문 정비

○ 수정안 발의 (문현신의원)

| 원 안 | 수 정 안 |
|---|---|
| 제7조(홍보관 운영 및 관리) ① (생략)<br>② 구청장은 홍보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br>③ ~ ⑤ (생략) | 제7조(홍보관 운영 및 관리) ① (원안과 같음)<br>② ----------<br><삭제>----------<br>③ ~ ⑤ (원안과 같음) |

| | |
|---|---|
| 제13조(지정 등의 해제)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br>1. ~ 2. (생략)<br>3. 제16조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br>4. (생략)<br>② (생략) | 제13조(지정 등의 해제) ① ----------<br>1. ~ 2. (원안과 같음)<br>3. 제12조 ----------<br>4. (원안과 같음)<br>② (원안과 같음) |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8. 붙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및 관광기념품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공예품, 특산품, 민예품 등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 일체를 말한다.
2. “관광기념품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이란 기념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홍보관 운영ㆍ관리 및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4.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ㆍ해제 및 사후관리
5.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6. 구 캐릭터를 활용하여 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관광기념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문화진흥위원회가 관광기념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홍보관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홍보관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홍보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홍보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설물을 증·개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공모전 등의 개최)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개발·제작·판매하는 업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운대구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 등의 해제)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일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홍보관, 우수업체의 육성과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 및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지원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수정안

안 제7조제2항 중 ‘제6조’를 삭제한다.

안 제13조제1항3호 중 ‘제16조’를 ‘제12호’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 --- |
| 제7조(홍보관 운영 및 관리) ① (생략)<br>② 구청장은 홍보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br>③ ~ ⑤ (생략) | 제7조(홍보관 운영 및 관리) ① (원안과 같음)<br>② ----------<삭제>----------<br>③ ~ ⑤ (원안과 같음) |
| 제13조(지정 등의 해제)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br>1. ~ 2. (생략)<br>3. 제16조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br>4. (생략)<br>② (생략) | 제13조(지정 등의 해제) ① ----------<br>1. ~ 2. (원안과 같음)<br>3. 제12조 ----------<br>4. (원안과 같음)<br>② (원안과 같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2. 25.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3.

(이상곤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기훈 조영진 서정학 정순세)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3.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5. (제1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이상곤 의원)

가. 제안이유

○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예우대상자 및 가족의 신분 증명

○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를 위한 예산 지원 가능(안 제5조)

○ 다른 조례에서 안 제4조제1항 관련 내용 제·개정시 반영(안 제7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병역명문가는 2004년도부터 3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자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역점사업으로 병역명문가 등록현황을 보면 2019.10월 현재 전국 5,378가구 27,154명이며, 해운대구는 50가구 257명임.

❍ 타구 사례를 보면 중구를 비롯한 12개구가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음.

❍ 병역법등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책무를 부과한 사항은 없지만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구민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 차원에서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한 부서 의견과 검토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제안(수정제안 조문 대비표 첨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 집행부에서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4조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사항이 각 개별조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제2조 제2호, 제3호

제4조(지원) 2항에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용어가 있으나 제2조(정의)에는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어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제3호를 신설하여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제4조 제1항

  제2조제3항의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용어 정의가 추가됨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감면대상을 “예우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을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변경

- 제4조 제1항“ 과 제7조 내용 중 감면은 ”매겨야 할 부담을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 뜻을 가지고 있어 면제를 중복사용 할 필요 없으므로 ”감면 또는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

- 제5조(홍보 및 지원)

  제4조(지원), 제5조(홍보 및 지원)으로 되어 있어 “지원”이 중복되므로 제5조(홍보 및 지원)을 제5조 (홍보)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은 지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5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4조 제3항으로 이동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원 안 | 수 정 안 |
| --- | --- |
| 제2조(정의) (생략)<br><br>2. “예우대상자” 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말한다.<br><br>3. (신설) |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br><br>2. “예우대상자” 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br><br>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br><br>② (생략)<br><br>③ (신설) |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br><br>② (원안과 같음)<br><br>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제5조(홍보 및 지원)<br>① (생략)<br>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br>① (원안과 같음)<br>② 삭제 |
| 제7조(다른조례와의 관계)<br>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br>감면 또는 면제와 | 제7조(다른조례와의 관계)<br>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br>감면과 |

##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로서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관련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협조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2. 25.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2. 13.

(이명원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3.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5. (제1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백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해운대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안 제4조)

▷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계획 수립

▷ 음주운전 예방활동의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08년에는 26,873건 발생 969명 사망하였으나, 2018년에는19,381건 발생 349명이 사망하여 10년 사이 사망자가 64% 감소하였고, 사고발생 건수도 28%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음주운전 기준 강화와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 최근 수년간 우리 구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생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2018.11월 윤창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구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음주운전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본 제정 조례안이 권고적, 선언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사료 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등)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
2.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구청장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음주사고 예방 관련 교육
2. 음주운전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공이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병행 추진)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2. 25.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4.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4.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5. (제1차 회의 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가족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하고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구 분 | 어린이집 명 | 위 탁 기 간 | 소재지 |
|---|---|---|---|
| 재위탁 | 반여3동어린이집 | 2020.4.1.~ 2025.3.31.<br>(5년간) | 재반로 256번길<br>13-61 |

❍ 위탁범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조건: 협약에 의함

❍ 위탁방법: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반여3동어린이집은 2015.4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였으며, 2020. 3. 31.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 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재위탁을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임.

❍ 위탁기간은 2020.4.1.부터 2025.5.31.까지 5년간임.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됨.

❍ 다만,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의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공신력, 재정능력, 원장의 전문성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붙　　임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끝.

국공립 반여3동어린이집

# 위탁운영체 선정 계획

□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2조, 제24조

○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 해운대구 사무 민간 위탁 조례 등

□ **대상시설 : 반여3동어린이집(원장 박희숙)**

□ **위탁방법 : 재위탁**

□ **위탁기간 : 2020.4.1. ~ 2025.3.31(5년간)**

□ **구의회 동의 :** 2020.2월(예정)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2020.2월(예정)

□ **위탁운영체 선정 및 계약체결 :** 2020.2월한

가 족 복 지 과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계획

국공립어린이집(반여3동)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 1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제12조,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및 제5조
-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 2019년 보육사업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 2 기본방향

-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 심사의 신뢰성 극대화
-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방지 및 공정성 확보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3 위탁대상

| 어린이집명 | 소 재 지 | 정원<br>(현원) | 연면적<br>(㎡) | 위탁기간 | 위탁체 | 원장<br>(생년월일) | 비 고 |
|---|---|---|---|---|---|---|---|
| 반여3동<br>어린이집 | 재반로256번길<br>13-61 | 210<br>(197) | 1,161.7 | 2020.4.1.~<br>2025.3.31 | 박희숙<br>(개인) | 박희숙<br>(78.2.5) | 2015.4.1<br>공모위탁 |

## 4 위탁체 선정방법

- 반여3동어린이집은 2015.4월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였

으며 2020.3.31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1회까지 재위탁 할 수 있음.

❍ 따라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현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함.

※ 구의회 동의

-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2017.3.10.)으로 구의회 동의 절차 이행(재계약)

## 5 재위탁 세부계획

❍ 재위탁시설 : 반여3동어린이집

❍ 심사대상 : 원장 박희숙(개인)

❍ 위탁기간 : 2020.4.1.~2025.3.31.(5년간)

❍ 재위탁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2020.1월중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위탁운영체 선정심사

▷ 개최일자 : 2020.2.(예정)

▷ 심사기관 : 해운대구 보육정책위원회

▷ 심사기준 : 위탁운영체(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총점 |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
|---|---|---|---|---|---|
| 100점 | 30점 | 30점 | 25점 | 10점 | 5점 |

▷ 심사방법

- 자기소개와 심사기준표에 의한 제출서류 설명 및 질의·응답

- 신청자는 해운대구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PPT로 발표
  ※ 불참시 위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소수점 이하 두자리수까지 계산)
- 결과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변경위탁
- 신청 운영체와 특수관계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척

## 6 행정사항

❍ 위탁기간 만료 알림(→반여3동어린이집) : 2019.12월중

❍ 구의회 안건 상정, 재계약 동의절차 이행 : 2020.1~2월중

❍ 위탁운영체 신청서 접수 : 2020.2월한

❍ 신청자 신원 조회 : 2020.2월중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2020.2월중

❍ 위탁운영체 선정 및 계약체결 : 2020.2월한

▸ 심사결과 80점미만일 경우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1부
2. 해운대구 보육정책위원회

해운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2. 25.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2. 14.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14.

다. 상 정 일 자 : 2020. 2. 25. (제1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가족복지과장)

### 가. 제안이유

❍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해운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함.

###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해운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위탁범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조건: 협약에 의함

❍ 위탁방법: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이내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해운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해운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이 2020.4.30.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체를 새로이 선정하려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2020.5.1.부터 2023. 4.30. 까지 3년간임.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교육·취업·자립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 부 : 해운대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

#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민간위탁 추진계획

## 1 배경 및 필요성

❍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4.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직영에 따른 공무원 충원, 공무직전환 등 인력수급에 따른 예산 문제를 위탁운영으로 절감

## 2 위탁사업 개요

### 1 위탁운영 시설 현황

❍ 위탁시설 :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위　　치 : 해운대로 575 국제빌딩 11층 (우동) 240.9㎡

➲ 상반기 중 청소년수련관(4층)으로 이전 예정

❍ 주요사업

| 구분 | 주요사업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 청소년 및 부모상담(심리검사,모래놀이치료)<br>청소년안전망구축 및 운영(위기청소년긴급구조)<br>찾아가는 청소년상담(청소년 동반자)<br>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사업<br>청소년참여위원회, 또래상담동아리, 학교폭력가,피해자 지원<br>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해소사업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상담지원(심리,학업복귀 등), 학업중단숙려제<br>교육지원사업(진학지원, 검정고시지원, 교육현장체험)<br>자립지원사업(직업체험, 진업탐색,사회성 훈련 등)<br>자기계발사업(문화예수르 신체단련, 봉사활동 등 )<br>건강지원(건강검진, 교육, 치료지원)<br>아웃리치, 자원연계 |

## 2 위탁개요

○ 위탁시설 :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선정방식 :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선정

○ 위탁기간 : 2020. 5. 1. ~ 2023. 4. 30. (3년)

○ 선정방법 : 심사평가표에 의한 심사결과 최고 고득점 법인(단체) 선정

○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으로서, 청소년 활동 및 복지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신청자격 세부내용**

【근거: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 3 現 수탁기관 현황

○ 수탁기관 : 재단법인 부산 YMCA(센터장 김소영)

○ 수탁기간 : 2017. 5. 1. ~ 2020. 4.30

○ 종사자수 : 15명(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포함)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학교밖청소년 학업, 자립지원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 3 추진일정

- ❍ 모집 공고 ····· ‘20. 3. 9. ~ 3.23.
- ❍ 신청 접수 ····· ‘20. 3.24. ~ 3.26.
-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결정 ····· ‘20. 3월말~4월초
- ❍ 위탁운영협약 체결 ····· ‘20. 4.14.한
- ❍ 위탁운영 개시 ····· ‘20. 5. 1.

## 4 행정사항

- ❍ 임시회 상정 : 2월 13일한
-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구보게재 의뢰 : 관광문화과
- ❍ 수탁자 모집 홍보 : 수련시설협의회 및 각 대학, 청소년단체
-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뢰 : 구의원, 전문가등